

중국 新해상교통안전법(번역본)

중국의 신 해상교통안전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학적·외교적·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계의 공장역을 하고 있기에 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 법의 전체 번역본을 한국해운협회의 제공으로 전재했다.

제장 총칙

제1조 해상 교통관리 강화, 해상 교통질서 유지, 생명과 재산 안전 보장, 국가 권의 수호를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 항행, 정박, 작업 및 기타 해상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① 국가는 법에 따라 바다를 이용하는 교통(交通用海)을 보장한다.

② 해상 교통안전 업무는 안전제일, 예방위주, 통행편의, 의법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해상 교통안전, 질서, 원활을 보장한다.

제4조 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전국 해상 교통안전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국가 해사관리기구는 해상 교통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담당하며, 기타 각급 해사관리기구는 직책에 따라 관할 내의 해상 교통안전 감독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5조 해상 교통안전의 선진 교육을 강화하고, 전 사회적인 해상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제6조 국가는 법에 따라 선원의 노동 안전과 직업 건강을 보장하고, 선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7조 선박, 해상 시설 항행, 정박, 작업 및 기타 해상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단체, 개인은 반드시 해상 교통안전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항해 보장 획득과 해상 구조의 권리를 향유하고, 해상 교통안전 수호와 해양 생태환경 보호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선진 과학기술의 해상 교통안전 업무에서의 응

용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해상 교통안전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해상 교통안전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제2장 선박, 해상 시설과 선원

제9조 ① 중국 국적 선박,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설치한 해상 시설, 컨테이너(船運集裝箱) 및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확정한 해상 교통안전과 관계된 중요 선박용 설비, 부품과 재료는 반드시 유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선박 검사 기구의 검사를 거쳐 합격하고, 상응하는 증서, 문서를 취득해야 한다. 문서의 목록은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제정하고 공포한다.

② 선박 검사 기구 설립은 반드시 국가 해사관리기구 허가를 거쳐야 한다. 선박 검사 기구 설립 조건, 절차 및 그 관리 등은 선박 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③ 관련 증서, 문서를 보유한 단체는 반드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선박, 해상 시설, 컨테이너 및 중요 선박용 설비, 부품과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반드시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기술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① 선박은 선박 등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에 선박 국적 등기를 신청하고, 국적 증서를 취득한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 항행, 정박, 작업할 수 있다.

② 중국 국적 선박을 멸실 또는 폐기한 경우, 선박 소유자는 반드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규정한 기한 내에 국적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선박 소유자가 기한이 지나도 국적 말소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강제로 선박 국적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할 수 있다. 선박 소유자가 공고를 발표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해당 선박의 국적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제11조 ① 중국 국적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안전 운항과 선박 오염 방지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



② 해사관리기구가 전관이 규정한 관리 체계에 대해 심사하여 합격한 경우, 부합 증명서와 상응하는 선박 안전 관리 증서를 발급한다.

제12조 중국 국적의 국제 항행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선박 보안 제도를 마련하고, 선박 보안 계획을 제정하며, 또한 선박 보안 계획에 따라 선박 보안 설비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전개해야 한다.

제13조 ① 중국 국적 선원과 해상 시설 위의 근무자는 반드시 해상 교통안전 및 상응하는 직무의 전문 교육,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② 중국 국적 선원은 반드시 선원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에 선원적임증서를 신청하여 취득하고, 또한 건강증명서도 취득해야 한다.

③ 외국 국적 선원이 중국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는 경우, 선원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④ 선원이 선박 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선원적임증서에 명기한 선박, 항행구역, 직무의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① 중국 국적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국제 항행 선박을 위해 해사관리기구에 해사 노동 증서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한다. 선박이 해사 노동 증서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에 따라 선원을 고용하고, 그와 노동 계약 또는 취업 협의를 체결하며, 또한 선박에 요구에 부합하는 선원을 배치
- (2)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선원의 선박 위에서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직업 건강 보장과 안전 보호, 근무와 휴식 시간, 급여보수, 생활 조건, 의료 조건, 사회보험 등이 국가 유관 규정에 부합
- (3)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요구에 부합하는 선원 진정과 처리 기제를 마련
- (4)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선원 파견 비용 및 선원 취업 기간에 상해, 질병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상응하는 재무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

② 해사관리기구는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문과 상의하여,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신청인 및 그 선박이 전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사 노동 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또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③ 해사 노동 증서 발급 및 감독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국무원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문과 더불어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15조 해사관리기구는 선원 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상용)선박(海船) 선원 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한다.

제16조 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과 기타 유관 부문, 유관 현금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완전한 선원 역의 돌발사건 예보와 응급 처리 기제를 마련하고, 선원 역의 돌발사건 긴급대응 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② 선원 역의 돌발사건 응급 처리는 선원을 파견한 단체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담당하며, 선원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협력한다.

③ 외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과 관련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선원 역의 돌발 사건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3장 해상 교통 조건과 항행 보장

제18조 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은 해상 교통 자원을 총괄적으로 기획(規劃, 장기계획)과 관리하며, 해상 교통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유효한 이용을 촉진한다.

② 해상 교통 자원 기획은 반드시 국토 공간 기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19조 ① 해사관리기구는 해역의 자연 상황, 해상 교통 상황 및 해상 교통안전 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선박 정규노선 구역, 선박 보고 구역, 교통관제 구역, 항행 금지 구역, 안전 작업 구역과 항의 묘박지 등 해상 교통안전 기능 구역을 획정, 조정한다.

② 해사관리기구가 선박 정규노선 구역, 항의 묘박지 및 기타 해양 기능 구역 또는 해양 이용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안전 작

업 구역을 획정 또는 조정하는 경우, 반드시 어업어정, 생태환경, 자연자원 등 유관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군사적 필요를 위해 항행 금지 구역을 획정, 조정하는 경우, 항행 금지 구역 획정, 조정을 담당하는 군사기관이 결정하고, 해사관리기구가 공포한다.

제20조 해양플랜트, 해안플랜트 건설이 해상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반드시 상황에 근거하여 선박 충돌을 방지하는 시설, 설비를 배치하고 전용 항로표지도 설치해야 한다.

제21조 국가는 완전한 선박 위치결정, 유도, 시각통보(授時), 통신과 원거리 감시 등 해상 교통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하여, 선박, 해상 시설을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2조 어떤 단체, 개인도 해상 교통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그 업무 기능을 방해하면 안 된다. 건축물, 구축물 건설, 시설과 설비 사용이 해상 교통안전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정상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건설하는 단체,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해상 교통 지원 서비스 시스템의 관리업체와 협상하여, 적절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23조 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상 교통안전 무선 통신 시설의 합리적 분포와 유효한 포괄을 보장하고, 해당 시스템(업계)의 해상 무선 기지국(소)의 건설 분포와 위치를 계획하며, 선박 제원의 무선 기지국 면허 및 기지국 번호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은 해당 시스템(업계)의 해상 무선 감시 시스템 건설을 조직하고 또한 무선 전파신호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며, 국가 무선 전신 관리기구와 더불어 해상 무선 전파 질서를 수호한다.

제24조 ①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 통신하는데 육상 무선 기지국(소)에 접속사용이 필요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 설치한 역내 해안 무선 기지국(소) 또는 위성 중계소(關口站)를 통해 접속을 진행해야 한다.

② 무선 통신 임무를 담당하는 선원과 육상 무선 기지국(소)의 근무자는 반드시 해상 무선 통신 규칙을 준수하고, 해상 교통안전 통신 채널의 당직근무(值守)와 소통을 유지해야 하며, 해상 교통안전 통신 주파수(頻率)를 사용하여 해상 교통 안전과 무관한 내용을 교류하면 안 된다.

③ 어떤 단체, 개인도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 기지국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해상 수색구조의 신분 식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제25조 천문, 기상, 해양 등 유관 단체는 반드시 항해 천문, 세계 시간, 해양 기상, 풍랑, 해류, 조석, 빙하 등 정보를 적시에 예보, 방송 그리고 제공해야 한다.

제26조 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은 공용 항로표지를 통일적으로 배치, 건설 그리고 관리한다. 해양플랜트, 해안플랜트의 건설 업체,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 철거하거나, 전용 항로표지 위치 이동 또는 항로표지 불빛, 효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해사관리기구가 확정된 항로표지 설치 지점에 부합해야 한다.

② 자연자원 주관 부문은 항로표지 시설과 장치의 육지, 해상, 섬 사용을 법에 따라 보장하며, 또한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주어야 한다.

③ 항로표지의 건설, 유지, 보수는 반드시 유관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항로표지 유지 업체와 전용 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반드시 항로표지에 대한 순찰과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항로표지가 양호하게 적용되는 상태에 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항로표지에 위치이동, 훼손, 멸실이 발생하면, 항로표지 유지보수 업체 또는 전용 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반드시 적시에 회복시켜야 한다.

제27조 어떤 단체, 개인이 아래 상황의 하나를 발견하면, 반드시 즉각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항로관리기구 직책 또는 전용 항로표지에 관련되면,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정시에 항로관리기구 또는 전용 항로표지 소유자에게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

- (1) 항행 보조 표지 또는 도선 시설이 위치이동, 훼손, 멸실
- (2) 해상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침몰물, 부유물, 좌초물(擱淺物) 또는 기타 항행 방해물이 있음
- (3) 기타 해상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이상 상황

제28조 ①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해상 교통안전 관리의 필요에 의거하여, 긴박성,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대해 항행 경고를 발표하고, 기타 해상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항행 통고를 발표해야 한다.



②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항행 경고, 항행 통고 및 선박 정규 노선 구역의 획정, 조정 상황을 해군 항해 보장 부문에 통보하며, 또한 적시에 유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29조 ①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적시에 선박, 해상 시설에 해상 교통안전 정보를 방송해야 한다.

② 선박, 해상 시설이 정규노선 구역, 교통관제구역 또는 통항 선박이 밀집된 구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할 때,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그의 청구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안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0조 ① 아래 선박이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획정한 도선 구역 내에서 항행, 정박 또는 정박지 이동(移泊)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도선 업체에 도선을 신청해야 한다.

- (1) 외국 국적 선박, 단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국무원 기준을 거친 뒤에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
- (2) 원자력 선박, 방사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 초대형 유조선(油輪)
- (3) 항구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LNG별크선, 위험화학물운반별크선
- (4) 길이, 너비, 높이가 상응하는 항로 통항 조건 한계치에 근접한 선박

② 전관 제3항, 제4항 선박의 구체적인 표준은 유관 해사관리기구가 항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제정하여 공포한다.

③ 선박이 도선을 지원하여 신청한 경우, 도선 업체는 반드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① 도선 업체는 반드시 적시에 상응하는 능력, 경험을 갖춘 도선사를 파견하여 선박을 위해 도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도선사는 반드시 도선 업체의 파견에 근거하여, 규정된 구역에서 유도되는 선박에 승하선하고, 안전하며 진지하게 선박 유도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유도되는 선박은 반드시 규정에 부합하는 승하선 장치를 배치하며, 또한 도선사의 선박 승하선과 선상에서 선박을 유도하는 동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③ 도선사가 선박을 유도할 때, 선장이 선박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해제하지 않는다.

제32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은 선박, 해상 시설과 항구

가 직면한 보안 위협 상황에 근거하여, 보안 등급을 확정하고 또한 적시에 발표한다. 선박, 해상 시설과 항구는 반드시 보안 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항행, 정박, 작업

제33조 ① 선박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유효한 선박 국적 증서 및 기타 법정 증서, 문서를 소지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출판된 항해도서 자료를 비치하며, 관련 국가, 지역 또는 조직의 깃발을 게양하고, 선명을 명기해야 한다.

② 선박은 반드시 최저 안전 정원 요구를 만족시키고, 적격의 유효한 증서를 소지한 선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해상 시설이 정박,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 증서, 문서를 소지해야 하며, 또한 규정에 따라 충돌방지, 신호, 통신, 소방, 구조 등 전문 기능을 갖춘 인원도 배치해야 한다.

제34조 ① 선장은 반드시 선박 출항 전에 검사하며 또한 출항 시에 선원 적임, 선박의 항해 적합성, 화물의 적재 적합성을 확인하고, 또한 기상과 해상 상황 정보 및 해사관리기구가 발표한 항행 통고, 항행 경고 및 기타 경고 정보를 파악하며, 상응하는 응급 조치를 시행하고, 위협을 무릅쓴 출항을 하면 안 된다.

②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선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하게 조작, 작업을 하도록 교사, 강요하면 안 된다.

제35조 ① 선박은 반드시 선박 검사 증서에 명기된 항행 구역 내에서 항행, 정박, 작업해야 한다.

② 선박이 항행, 정박,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항행 규칙을 준수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며, 표지를 게양하고, 충분한 여유 수심을 유지해야 한다.

제36조 ① 선박은 항행 중에는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선박의 자동식별, 항행 데이터 기록, 원거리 식별과 추적, 통신 등 항행 안전, 보안, 오염 방지와 관련된 장치를 가동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현시와 기록을 진행해야 한다.

② 어떤 단체, 개인도 항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개봉, 해체, 초기화, 재설치를 하거나 그 기록된 정보를 해독하면 안되나,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제외한다.

제37조 선박은 반드시 항해일지, 기관일지, 무선통신기록부 등 항행 기록을 비치하고, 유관 규정에 따라 전면적이고, 진실하

며, 적시에 해상 교통안전에 관련된 선박 조작 및 선박 항행, 정박, 작업 중의 중요 사건을 기록하며, 또한 관련 기록부를 선량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38조 ① 선장은 선박 관리와 지휘를 담당한다. 해상 생명 안전, 선박 보안과 선박 오염 방지 보장 방면에서, 선장은 독립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 승선 인원, 선박 항행 문건, 화물 및 기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선장이 그의 직권 범위 내에서 발표한 명령은 선원, 승객 및 기타 승선 인원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39조 ① 선박과 승선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선장은 직권 범위 내에서 선상에서 위법 범죄 활동 진행 혐의가 있는 인원에게 감금 또는 기타 필요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의 증거 은닉, 훼손, 위조를 방지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이 전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와 2명 이상의 승선 인원이 서명한다. 중국 국적 선박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한 뒤에는 반드시 적시에 관련 인원을 유관 주관 부문에 이송해야 한다.

제40조 승선 인원이 타인의 건강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전염병을 앓거나 앓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선장은 반드시 즉각 상응하는 응급방안을 가동하고, 직권 범위 내에서 관련 인원에게 대해 필요한 격리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적시에 유관 주관 부문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1조 선장이 항행 중에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해 직책을 이행할 수 없으면, 반드시 조타원 중 직무가 가장 높은 사람이 선장 직무를 대리해야 하며, 선박이 다음 항구로 출항하기 전에, 그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새로운 선장을 파견하여 부임시켜야 한다.

제42조 선원은 반드시 유관 항행, 당직근무의 규칙 제도와 조작 규정 및 선장의 지령에 따라 선박을 조종, 관리하고, 안전 당직근무를 유지하며, 무단으로 직무를 유기하면 안 된다. 선원이 선박에서 당직근무를 이행하기 전과 당직근무 기간에는 안전 당직근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을 섭취하면 안 된다.

제43조 ① 선박이 항구, 묘박지를 출입하거나, 교량하부수역

(橋區水域), 해협, 협수로, 중요 어업 수역, 통항 선박이 밀집한 구역, 선박 정규노선 구역, 교통관제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반드시 견시(瞭望)를 강화하고, 안전 항속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상기 구역의 특수 항행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② 전관이 말하는 중요 어업 수역은 국무원 어업어정 주관 부문이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획정하여 공포한다.

③ 선박이 항로를 지나가는데 항로 내의 선박의 정상 항행을 방해하면 안 되고, 다른 선박의 뱃머리를 앞지르면(搶越) 안 된다. 교량 통항 척도를 초과하는 선박의 교량하부수역 진입을 금지한다.

제44조 ① 선박은 규정을 위반하여 항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지나가면 안 된다.

② 선박이 선박 보고 구역을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해사관리 기구에 선박 위치와 동향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안전 작업 구역, 항외 묘박지 범위 내에서는 양식, 재배, 어로 및 기타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 또는 활동 중사를 금지한다.

제45조 선박이 너무 긴, 너무 높은, 너무 폭이 큰, 반쯤 잠긴 선박, 해상 시설 또는 기타 물체를 적재하거나 예인하여 항행하는 경우, 반드시 예인 부위 강화, 방어 항행 등 특수한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출항 전에 해사관리기구에 항행 계획을 보고하고, 또한 유관 규정에 따라 신호를 현시하고, 표지를 게양해야 한다. 이동식 플랫폼, 건조기(乾船渠), 부선기(浮船塢) 등 대형 해상 시설을 예인하는 경우에는, 또한 반드시 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구가 발급한 예항 검사 증서를 확인받아야(交驗) 한다.

제46조 ① 국제 항행 선박이 항만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에 허가를 신청하고 또한 해사관리기구 및 기타 항만검사기구의 감독검사도 받아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5영업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② 외국 국적 선박이 비대의 개방 수역에 임시로 진입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선박 항만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③ 국내 항행 선박이 항구, 항외 하역장(裝卸站)에 출입하는 경



우,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에 선박의 항차 계획, 항행 적합 상태, 선원 배치와 화객 운송 등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47조 ① 선박은 반드시 안전 조건에 부합하는 부두, 계선장(泊位), 하역장, 모박지, 안전 작업 구역에 정박해야 한다. 선박 정박은 기타 선박, 해상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면 안 된다.

② 선박이 항구, 항외 하역장을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접안(靠泊) 조건과 조석간만(潮汐), 기상, 해상 상황 등 항행 조건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③ 너무 긴, 너무 높은, 너무 폭이 큰 선박 또는 조종 능력이 제한을 받는 선박이 항구, 항외 하역장을 출입하여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선박의 출입항 안전 조건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야 하며, 또한 선박에게 예인선 추가 배치, 조류 상승 시 입항(乘潮進港) 등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제48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 시공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의 허가를 거치며, 또한 상응하는 안전 작업 구역도 설정해야 한다. 해상 시공 작업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1) 시공 작업의 업체, 인원, 선박, 시설이 안전 항행, 정박, 작업의 요구에 부합
- (2) 시공 작업 방안 보유
- (3) 해상 교통안전과 선박의 해양 환경오염 방지 요구에 부합하는 보장 조치, 응급 방안과 책임제도 보유

② 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반드시 설정한 안전 작업 구역 내에서 작업해야 하며, 또한 해상 교통안전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기타 무관한 선박, 해상 시설은 안전 작업 구역에 진입하면 안 된다.

③ 항구 수역 내에서 채굴, 폭발 등 항구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항구 관리의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제49조 체육, 오락, 연습, 시범 항행, 과학적 관찰 등 수상과 수중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해상 교통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상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10영업일 전에 활동에 관련되는 해역 범위를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50조 해상 시공 작업 또는 수상과 수중 활동을 종료한 뒤, 유관 단체, 개인은 반드시 적시에 해상 교통안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폐단을 제거해야 한다.

제51조 ① 항행 장애물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유관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해사관리기구에 항행 장애물의 명칭, 형상, 크기, 위치와 깊이를 보고하며, 또한 해사관리기구가 한정한 기간 내에 인양(打撈)하여 제거해야 한다. 항행 장애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의 인양하여 제거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② 항행 장애물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표지 설치, 인양을 기획하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발생한 비용은 부문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제52조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어서, 해상 교통안전에 비교적 큰 영향이 있으면,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항행 정지, 속도 제한 또는 교통관제 구역 획정 등 상응하는 교통관제 조치를 취하고 사회에도 공고해야 한다.

- (1) 날씨, 해상 상황이 악화
- (2) 항행에 영향을 끼치는 해상 위험 또는 해상 교통 사고 발생
- (3) 군사 훈련, 연습 또는 기타 관련 활동 진행
- (4) 대형 수상 그리고 수중 활동 전개
- (5) 특정 해역의 통항 밀도가 포화상태에 근접
- (6) 기타 해상 교통 안전에 대해 비교적 큰 영향이 있는 상황

제53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은 해상 교통안전 수호,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 주관 부문과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외국 국적 선박의 영해에서의 비무해(非無害) 통과를 방지 그리고 제지할 수 있다.

제54조 ① 아래 외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 (1) 잠수함
- (2) 원자력 선박
- (3)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유독한 물질을 적재한 선박
-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 선박

② 전관이 규정하는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 반드시 유관 증서를 소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부합하는 특별 예방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해사관리기구의 지령과 감독도 받아야 한다.

제55조 ① 본법 규정에 따라 항만 진입 허가를 획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국적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수(內水)에 진입하면 안되나, 인원의 위급한 질병, 기계 고장, 조난, 피항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해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입할 수 있다.

② 외국 국적 선박이 전관이 규정한 긴급 상황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에 진입한 경우, 반드시 진입하는 동시에 해사관리기구에 긴급 보고하고, 해사관리기구의 지령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관할 해역의 해경 기구, 가까운 출입국심사기관과 현지 공안기관, 해관(세관) 등 기타 주관 부문에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군용선박이 군사임무를 집행하거나, 공무선박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긴급 상황을 만난 경우, 해상 교통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여 항행, 정박, 작업 유관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해상 화객(客貨) 운수 안전

제57조 구난(搶險) 또는 생명 구조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선은 반드시 선박 검사 증서가 규정한 승객 탑승 정원에 따라 승객을 탑승시켜야 하며, 화물선이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반드시 선박 검사 증서가 규정한 적재중량선과 적재화물 종류에 부합해야 하며, 승객을 탑승시키면 안 된다.

제58조 ① 여객선이 승객을 탑승시키는 경우 동시에 위험 화물을 적재하면 안 된다.

② 승객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규정한 위험 물품을 몸에 휴대하거나 짐 속에 끼워 넣으면 안 된다.

제59조 여객선은 반드시 잘 보이는 위치에 승객에게 안전 수칙을 명시하고, 안전 표지와 경고표시물을 설치하며, 또한 승객에게 구명 도구의 사용 방법 및 긴급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응

급조치를 소개해야 한다. 승객은 반드시 안전 승선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제60조 ① 해상 페리선착장(渡口)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완전한 페리선착장 안전 관리 책임제를 마련하고, 해상 페리선착장의 안전 관리 방법을 제정하며, 해상 페리선착장 경영자의 안전 주체 책임 실시를 감독, 지도하고, 화객 운송 질서를 유지하며, 화객 운송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② 해상 페리선착장의 승객 운송 노선은 페리선착장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해사관리기구와 더불어 획정한다. 페리선은 반드시 획정한 노선을 따라 안전하게 화객을 운송해야 한다.

③ 악화된 날씨, 해상 상황을 만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또는 그가 지정한 부문은 반드시 화객 운송 정지의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61조 선박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유관 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안전하게 하역(裝卸), 적재, 격리, 결속(系固) 그리고 관리해야 한다.

제62조 선박이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유효한 위험 화물 적재 적격 증서를 소지하며, 또한 위험 화물의 특성과 응급 조치의 요구에 근거하여, 위험 화물 응급 처리 방안을 편성하고, 상응하는 소방, 응급 설비와 기자재를 비치해야 한다.

제63조 ① 탁송인이 위험 화물을 탁송한 경우, 반드시 그 정식 명칭, 위험성 및 반드시 취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운송인(承運人)에게 통지하고, 또한 유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선량하게 포장하며, 잘 보이는 위험물 표지와 라벨을 설치해야 한다.

② 탁송인은 탁송하는 일반 화물에 위험 화물을 끼워 넣거나 위험 화물을 일반 화물로 허위 신고하여 탁송하면 안 된다.

③ 탁송인이 탁송한 화물이 국제 해상 위험 화물 운수 규칙과 국가 위험 화물 품명표 상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위험한 특성이 있는 화물인 경우, 탁송인은 또한 반드시 유관 전문 기관이 발급한 해당 화물의 위험 특성 및 반드시 취해야 하는 방호 조치 등의 상황이 명기된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④ 화물의 위험 특성의 판단 기준은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64조 ① 선박이 위험 화물을 적재하여 항구를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해사관리기구 허가를 거쳐야 하며, 또한 해사관리기구에 출입하는 항구와 정류하는 시간 등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1) 운송하는 위험 화물이 해상 안전 운수 요구에 부합
- (2) 선박의 적재가 소지한 증서, 문서의 요구에 부합
- (3) 정박 또는 위험 화물 하역 작업을 진행하려는 항구, 부두, 계선장이 유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위험 화물 작업 경영 자질을 구비

②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 선박, 항로가 고정적이고 또한 화물 종류도 고정된 선박은 일정 기한 내에 여러 차례의 출입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④ 해사관리기구가 허가한 경우, 반드시 항구 행정관리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65조 ① 선박, 해상 시설이 위험 화물 운송 또는 하역, 옮겨 싣기(过驳)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작업 방안을 편성하고, 유관 강제성 표준과 안전 작업 조작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안전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② 항구 수역 외에서 벌크 액체 위험 화물 옮겨 싣기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또한 반드시 아래 조건에도 부합하고, 해사관리기구에 허가를 거쳐 안전 작업 구역도 설정해야 한다.

- (1) 옮겨 싣기 작업을 진행하려는 선박 또는 해상 시설이 해상 교통안전과 선박의 해양 환경오염 방지의 요구에 부합
- (2) 옮겨 싣기 작업을 하려는 화물이 안전한 옮겨 싣기 요구에 부합
- (3) 옮겨 싣기 작업을 하려는 인원이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옮겨 싣기 작업 능력을 구비
- (4) 작업하려는 수역 및 그 바다, 주변 환경이 옮겨 싣기 작업 전개에 적절
- (5) 옮겨 싣기 작업이 해양 자원 및 부근의 군사 목표, 중요 민용 목표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지 않음
- (6) 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옮겨 싣기 작업 방안, 안전 보장 조

치와 응급 방안 보유

③ 단일 항차로 작업하는 선박에 대해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시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해야 하며, 특정 수역 또는 다회 항차 작업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해야 한다.

제6장 해상 수색구조

제66조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遇險) 인원은 법에 따라 생명 구조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생명 구조는 환경과 재산 구조에 우선한다.

제67조 해상 수색구조 업무는 반드시 정부 영도, 통일적 지휘, 속지주의, 전문가와 군중의 연합, 신속접근(就近快速)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가는 해상 수색구조 협조 기제를 마련하여, 전국의 해상 수색구조 응급 대응 업무를 총괄하고, 해상 수색구조 업무에서의 중대 문제를 연구하여 해결하며, 중대한 해상 수색구조 응급 행동을 조직하고 협조한다. 협조 기제는 국무원 유관 부문, 단체와 유관 군사기관으로 구성한다.

② 중국 해상 수색구조 센터와 유관 지방 인민정부가 설립한 해상 수색구조 센터 또는 지정된 기구(이하 해상 수색구조 센터)가 해상 수색구조의 조직, 협조,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

제69조 연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해상 수색구조 자금을 안배하여, 수색구조 업무의 정상적인 전개를 보장해야 한다.

제70조 해상 수색구조 센터의 각 구성원은 반드시 해상 수색구조 센터의 통일적 조직, 협조, 지휘 아래,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해상 수색구조 응급, 구난구조, 지원 보장, 사후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71조 ① 국가는 전문 해상 수색구조팀을 설립하여, 해상 수색구조 역량 건설을 강화한다. 전문 해상 수색구조팀은 반드시 전문 수색구조 장비를 배치하고, 정기적인 연습과 일상 훈련 제도를 마련하여, 수색구조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② 국가는 사회적 역량이 해상 수색구조팀을 설립하여, 해상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72조 ①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 및 인원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 반드시 즉각 해상 수색구조 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해상 위험 상황을 허위보고, 누장보고하면 안 된다.

②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 및 인원이 조난 신고와 신호를 잘 못 보낸 경우, 즉각 해상 수색구조 센터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영향을 해소해야 한다.

③ 기타 어떤 단체, 개인이 해상 위험 상황을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반드시 즉각 해상 수색구조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제73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선박, 해상 시설은 반드시 명칭, 국적과 등기항을 상호 통보하고, 자신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태롭게 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상대방 인원에 대한 구조에 매진하며, 사고 현장 수역을 무단이탈하거나 도주하면 안 된다.

제74조 ① 조난을 당한 선박, 해상 시설 및 그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는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생명과 재산 손실 그리고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 감소시켜야 한다.

② 선박이 조난을 당한 때에는, 승객은 반드시 선장의 지휘에 복종하고, 상응하는 응급 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승객은 필요한 위험 상황 정보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③ 선장이 선박 포기를 결정한 때에는, 반드시 승객, 선원 순으로 이선하도록 조직하며, 또한 법정 항행 자료 구출에 매진해야 한다. 선장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선해야 한다.

제75조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가 구조요청 신호를 받았거나 어떤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을 발견한 경우, 자신의 안전을 엄중하게 위태롭게 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반드시 조난을 당한 인원 구조에 매진해야 한다.

제76조 ① 해상 수색구조 센터가 위험 상황 보고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즉각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적시에 정부 유관 부문, 전문 수색구조팀, 사회의 유관 단체 등 각종 역량이 수색구조에 참가하도록 조직, 협조, 지휘하며, 또한 현장을 지정하여 지휘해야 한다. 수색구조에 참가한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 및 인원은 반드시 현장 지휘에 복종하고, 적시에 수색구조 동태와 수색구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수색구조 행동의 중지, 회복, 종료 결정은 해상 수색구조 센터가 한다. 해상 수색구조 센터 동의를 거치지 않고, 수색구조에 참가한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 및 인원은 수색구조 활동에

서 무단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

③ 군대가 해상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7조 ① 조난을 당한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 또는 조난을 당한 인원은 반드시 해상 수색구조 센터와 현장 지휘의 지령에 복종하고, 적시에 구조를 받아야 한다.

② 조난을 당한 선박, 해상 시설, 항공기가 수색구조에 협력하지 않으면, 현장 지휘는 조난의 위험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8조 해상 사고 또는 위험 상황이 발생한 뒤, 유관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적시에 의료기관이 조난을 당한 인원을 위해 긴급 의료 구조를 제공하고, 구조된 인원을 위해 필요한 생활 보장을 제공하도록 조직하며, 또한 유관 방면이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제7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이 우리나라가 수색구조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해역 내에서 수색구조를 전개하는 경우, 본장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중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및 해상 수색구조 책임 구역 이외의 기타 해역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 해상 수색구조 센터가 정보를 입수한 뒤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제7장 해상 교통사고 조사와 처리

제80조 선박, 해상 시설에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시에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고, 조사도 받아야 한다.

제81조 해상 교통사고는 발생한 손해의 후폭풍에 근거하여 특별 중대사고, 중대사고, 대형사고 그리고 일반 사고로 나눈다. 사고 등급을 구분하는 신체 사상 표준은 안전 생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며, 사고 등급을 구분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표준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국무원 유관 부문과 더불어 해상 교통 사고에서의 특수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친 뒤 공포하여 시행한다.

제82조 ① 특별 중대 해상 교통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부문이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해사



관리기구는 반드시 조사 업무 전개에 참여 또는 협력해야 한다.

② 기타 해상 교통사고는 해사관리기구가 사고 조사팀을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유관 부문이 협력한다. 국무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사고 조사팀을 직접 조직하거나 유관 부문에 수권하여 조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 해사관리기구가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데, 사고가 군사 운수 임무 집행에 관련되면, 반드시 유관 군사기관과 더불어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어업 선박과 관련되면, 어업어정 주관 부문, 해경 기구는 반드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83조 해상 교통사고 조사는 반드시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적시성이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사고 사실과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제84조 해사관리기구는 사고 조사 처리 필요에 근거하여 당사 선박의 항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개봉, 해체하거나 장치가 기록한 정보를 해독할 수 있으며, 선박을 지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하거나 항구 이탈을 금지시키고, 선박 또는 해상 시설의 증서, 문서, 물품, 자료 등을 압류하여 선량하게 보관할 수 있다. 유관 인원은 반드시 사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85조 ① 해상 교통사고 조사팀은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내에 해상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사고 조사팀을 조직한 부문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사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한은 최장 9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사고의 기술적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고 조사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해상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내에 사고 책임인정서를 작성하여, 해상 교통사고 처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③ 사고의 손실이 비교적 작고, 사실이 분명하며, 책임이 명확하면,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의 규정에 따라 간이조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해상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사고 책임 인정서는 반드시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86조 ① 중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외에서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적시에 해사관리기구에 사고 상황을 보고하고 또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중국 국민에게 중상 또는 사망을 일으킨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사에 참여한다.

제87조 선박, 해상 시설이 해상에서 악화된 날씨, 해상 상황 및 의외의 사고를 조우하여,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어서, 설명과 더불어 시간, 해역 및 취한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에 해사 성명 의견서(声明签证)를 신청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의견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8장 감독관리

제88조 ① 해사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에서의 항행, 정박, 작업 및 기타 해상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 중사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② 해사관리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해 입항국(港口国), 연안국(沿岸国)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③ 해사관리기구 직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복장을 착용하고, 직무 관련 표지를 패용하며, 법 집행 증서를 제시하고, 스스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해사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하는 경우, 유관 단체, 개인은 반드시 협력해야 하며,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하면 안 된다.

제89조 ① 해사관리기구가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승선 검사, 증서확인, 현장검사, 유관 인원 심문, 전자감시 등 방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위험 화물 보고 태만, 허위 보고 등 상황이 존재한다는 혐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는 상자 개봉 검사 등 방식을 취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상자 개봉 검사 상황을 유관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와 유관 단체, 개인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90조 ①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해상 시설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그의 정상적인 작업에 대한 영향을 회피, 감소시켜야 한다.

②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즉각 감독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엄중한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 항행 중인 선박을 가로막고 검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

제91조 ① 선박, 해상 시설이 항구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즉각 또는 기한 내 시정, 조작 제한을 명령하고, 지정 지점으로 이동, 입항 금지 또는 퇴거 출항을 명령해야 한다.

② 선박, 해상 시설이 항행 부적합 또는 예인 부적합 상태에 처하고, 선원, 해상 시설 위의 관련 인원이 유효한 법정 증서, 문서를 미소지하거나, 기타 해상 교통 안전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단이 존재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상황에 근거하여 유관 선박, 해상 시설의 출입항을 금지하고, 유관 증서, 문서를 압수하거나 항행 정지, 항로 변경, 지정 지점에서의 이동 또는 작업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선박에 대한 강제적인 적재물 감축을 진행할 수 있다. 강제적인 적재물 감축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위법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③ 선박, 해상 시설에 해상 교통사고, 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제세공과금, 체납금을 정산하지 않았으면서 또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또한 그의 출항을 금지할 수도 있다.

제92조 ① 외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영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면, 해사관리기구는 그의 이탈을 명령할 권한이 있다.

② 외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해상 교통 안전 또는 선박 오염 방지의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긴급추격조사권(緊追權)을 행사할 수 있다.

제93조 어떤 단체, 개인에게도 해사관리기구에 해상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보할 권리가 있다. 해사관리기구가 제보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적시에 사실확인,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94조 해사관리기구가 감독검사 중에 선박, 해상 시설이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적시에 유관 주관 부문에 통보하거나 송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9장 법적 책임

제95조 선박, 해상 시설이 유효한 증서, 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선박 또는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과 유관 책임 인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상황이 엄중하면,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 18개월 내지 30개월동안 압수 내지는 선원 적임 증서 말소까지도 하며, 선박이 소지한 위조, 변조 증서, 문서에 대해서는 몰수하고, 엄중한 안전 병폐가 존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제96조 선박 또는 해상 시설에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선박 또는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과 유관 책임 인원에 대해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상황이 엄중하면, 위법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유관 증서, 문서를 말소하고,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12개월 내지 24개월까지 압수 내지는 선원 적임 증서 말소까지도 한다.

- (1) 선박, 해상 시설의 실제 상황이 소지한 증서, 문서와 부합하지 않음
- (2) 선박이 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거나, 기타 국가, 지역 또는 조직의 깃발을 위법 게양
- (3) 선박이 규정에 따라 선명, 선박 식별 번호, 선박 국적 항구, 적재중량선 표지를 표기하지 않음
- (4) 선박, 해상 시설의 배치 인원이 최저 안전 배치인원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제97조 선박에서 선원 적임 증서, 선원 건강 증명을 소지하지 않고 근무하거나 소지한 선원 적임 증서, 건강 증명이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책임 선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내지 12개월 압수 내지는 선원 적임 증서 말소까지도 한다.



제98조 ① 사기,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중국 국적 선박을 위해 관련 증서, 문서를 취득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유관 허가를 철회하고, 관련 증서, 문서를 몰수하며, 선박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4만위안 이상 4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사기, 뇌물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선원 적임 증서를 취득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유관 허가를 철회하고, 선원 적임 증서를 몰수하며, 책임 선원에 대해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9조 선원이 안전 당직근무를 유지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 당직근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 약품 또는 기타 물품을 반입하거나, 기타 해상 선원 당직근무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선장, 책임 선원에 대해 1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선원 적임 증서를 3개월 내지 12개월까지 압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말소한다.

제100조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해양플랜트, 해안플랜트를 건설하는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선박 충돌을 방지하는 시설, 설비를 배치하지 않고 또한 전용 항로표지도 설치하지 않음
- (2) 해상 교통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훼손하거나 그 업무 효능을 방해
- (3) 해사관리기구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용 항로표지를 설치, 철거, 전용 항로표지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항로표지 불빛, 효율 등을 변경하는 등 기타 상황 또는 해사관리기구가 확정한 항로표지 설치 지점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임시 항로표지를 설치
- (4) 안전 작업 구역, 항외 묘박지 범위 내에서 양식, 재배, 어로 및 기타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 또는 활동에 종사

제101조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유관 책임 인원에 대해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하고, 또한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압수한다.

- (1) 무선 통신 임무를 담당하는 선원과 육상 무선 기지국(소)의 근무자가 해상 교통 안전 통신 채널의 당직(值守)과 소통을 유지하지 않거나, 해상 교통 안전 통신 주파수를 사용하여 해상 교통 안전과 무관한 내용을 교류
- (2) 국가 유관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 기지국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해상 수색구조의 신분 식별에 영향을 끼친 경우
- (3) 기타 해상 무선 통신 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102조 ① 선박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선(引航)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에 대해 1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유관 선박 증서를 3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압수하고, 선장의 선원 적임 증서를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압수한다.

② 도선업체가 도선사를 파견하는데 과실이 존재하여, 선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도선업체에 대해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도선업체의 파견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도선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사관리기구가 선박을 유도한 인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3조 선박이 해상에서 항행, 정박, 작업을 하는데,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 책임 선원에 대해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원 적임 증서를 3개월 내지 12개월동안 압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말소한다.

- (1) 선박이 항구, 묘박지를 출입하거나 교량하부수역, 해협, 협수로, 중요 어업 수역, 통항 선박이 밀집된 구역, 선박 정류노선 구역, 교통 관제 구역을 통과할 때, 견시를 강화하지 않고, 안전 항속을 유지하지 않으며 또한 상기 구역의 특수 항행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유관 규정에 따라 신호 현시, 표지 계양 또는 충분한 여유 수심 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3) 안전 출항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데 위험하게 출항하거나, 규장을 위반하여 위험하게 조작, 작업을 하거나 선박 검사 증서에 명기된 항행 구역을 따라 항행, 정박,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4) 유관 규정에 따라 선박의 자동 식별, 항행 데이터 기록, 원거리 식별과 추적, 통신 등 항행 안전, 보안, 오염 방지와 관련된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또한 지속적으로 현시와 기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5) 항행 데이터 기록 장치를 무단으로 개봉, 해체, 초기화, 재설치하거나 그 기록의 정보를 해독한 경우
- (6) 선박이 항로를 가로질러 항로 내의 선박의 정상 항행을 방해하고, 다른 선박의 선수를 앞지르거나 교량 통항 척도를 초과하는데 교량하부수역에 진입한 경우
- (7) 선박이 규정을 위반하여 항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가로지른 경우
- (8) 선박이 너무 길고, 너무 높으며, 너무 폭이 크고, 반쯤 잠긴 선박, 해상 시설 또는 기타 물체를 운송 또는 예인하여 항행하는데, 특수한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항 전에 해사관리기구에 항행 계획을 보고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신호 현시, 표지 계양을 하지 않거나, 이동식 플랫폼, 부선거 등 대형 해상 시설을 예인하는데 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구가 발급한 예방 검사 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9) 선박이 안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두, 계선장, 하역장, 묘박지, 안전 작업 구역에 정박하거나, 정박이 기타 선박, 해상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 (10) 선박이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 증서가 설정한 승객 탑승 정원, 적재중량선, 적재 화물 종류를 초과하여 승객,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객선이 승객을 탑승시킨 동시에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 (11) 선박이 승객에게 안전 수칙을 명시하지 않고, 안전 표지와 경고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2) 유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하역, 적재, 격지, 결속 그리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13) 기타 해상 항행, 정박, 작업 규칙을 위반한 행위

제104조 ① 국제 항행 선박이 허가없이 항만에 출입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 또는 기타 책임 인원에 대해,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말소한다.

② 국내 항행 선박이 항구, 항외 하역장을 출입하는데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 또는 기타 책임 인원에 대해 5백위안 이상 5천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5조 ① 선박, 해상 시설이 허가 없이 해상 시공 작업에 종사하거나, 허가에 따라 요구하지 않고, 설정한 안전 작업 구역을 벗어나서 작업을 진행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며, 위법 선박,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압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말소한다.

② 해상 교통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수상과 수중 활동에 종사하는데,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위법 선박,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 책임 선원에 대해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6조 항행 방해물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대리 이행을 실시할 권한이 있으며, 대리 이행의 비용은 항행 방해물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 (1) 유관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음
- (2) 해사관리기구에 항행 방해물의 명칭, 형상, 크기, 위치와



깊이를 보고하지 않음

- (3) 해사관리기구가 한정한 기한 내에 항행 방해물을 인양하여 제거하지 않음

제107조 외국 국적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수, 영해를 출입하는데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에 대해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8조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게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 책임 선원 또는 기타 책임 인원에 대해,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상황이 엄중하면, 작업 또는 항행 정지를 명령하며,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압수 내지는 선원 적임 증서 말소까지도 한다.

- (1) 허가 없이 항구를 출입하거나 벌크 액체 위험 화물 옮겨 실기 작업에 종사
- (2)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 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상응하는 소방, 응급 설비와 기자재를 배치하지 않음
- (3) 유관 강제성 표준과 안전 작업 조작 규정의 요구를 위반하여 위험 화물 하역, 옮겨 실기 작업에 종사

제109조 탁송인이 위험 화물을 탁송하고, 아래 상황의 하나가 있으면,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위안 이상 30만 위안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탁송한 위험 화물의 정식 명칭, 위험 성질 및 반드시 취해야 하는 방호 조치를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않음
- (2) 유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강제성 표준과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위험 화물에 대해 선량하게 포장하지 않고, 잘 보이는 위험품 표지와 라벨을 설치하지 않음
- (3) 탁송한 일반 화물에 위험 화물을 끼워 넣거나 위험 화물을 일반 화물로 허위 보고하여 탁송
- (4) 법에 따라 유관 전문 기관이 발급한 해당 화물의 위험 특성 및 반드시 취해야 하는 방호 조치 등 상황을 명기한 문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10조 선박, 해상 시설이 조난을 당하거나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고 태만, 허위 보고 정황이 존재하면, 해사관리기구가 위법 선박,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선장, 책임 선원에 대해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내지 24개월 까지 압수하며, 상황이 엄중하면, 위법 선박,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말소한다.

제111조 선박에 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도주하면, 해사관리기구는 위법 선박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10만 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에 대해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뿐 아니라 선원 적임 증서도 말소하며, 처벌을 받은 자는 평생 다시 신청 하면 안 된다.

제112조 선박, 해상 시설이 법에 따라 해상 수색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상 수색구조 센터의 지휘에 복종하지 않으면,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해상 시설의 소유자, 경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 압수 내지 선원 적임 증서 말소까지도 한다.

제113조 유관 단체, 개인이 해사관리기구의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하거나, 감독검사를 받을 때 허위를 꾸며내면, 해사관리기구가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선장, 책임 선원의 선원 적임 증서를 6개월 내지 24개월 동안 압수 내지는 선원 적임 증서 말소까지도 한다.

제114조 교통운수 주관 부문, 해사관리기구 및 기타 유관 부문의 직원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익편취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115조 해상 교통 사고로 인해 민사 분쟁이 유발되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16조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하며,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하고,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

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0장 부칙

제117조 본법의 아래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선박이란, 각종 배수 또는 비배수의 선(船), 정(艇), 뗏목(筏), 호버크라프트(水上飛行器) 잠수함, 이동식 플랫폼 및 기타 이동식 장치를 가리킨다.

해상 시설이란, 수상과 수중의 각종 고정식 또는 부유식 건축물, 장치와 고정 플랫폼을 가리키나, 부두, 방파제 등 항구 시설은 포괄하지 않는다.

내수(內水)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기선에서 육지를 향하여 그어서 해안선에 이르는 해역을 가리킨다.

시공 작업이란, 탐사, 채굴, 폭파, 수상과 수중 건축물 또는 시설 구축, 유지보수, 철거, 항로 건설, 준설(疏浚)(항로 확보 준설 제외) 작업, 침몰된 선박과 물건 인양을 가리킨다.

해상 교통사고란, 선박, 해상 시설이 항행, 정박,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충돌, 좌초(擱淺), 압초충격(觸礁), 접촉(接觸), 화재, 풍재(風災), 풍랑피해(浪損), 침몰 등 원인으로 인해 인명 사상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가리킨다.

해상 조난이란, 해상 생명 안전, 수역 환경에 대해 위협을 구성하며, 즉각 조치를 취하여 회피, 통제, 감경 그리고 제거할 필요가 있는 각종 상황을 가리킨다.

위험 화물이란, 국제 해상 위험 화물 운수 규칙과 국가 위험 화물 품명표 상에 열거되고, 가연성, 폭발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오염 위해성 등이 있으며,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신체 상해, 재산 손실 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특별 방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화물을 가리킨다.

해상 페리선착장(渡口)이란, 해상의 도서 사이, 해상의 도서와 대륙 사이 및 바다로 격리되어 서로 바라보는 대륙과 대륙 사이에, 페리선박으로 인원, 짐, 차량을 운송하는 교통 기반 시설을 가리킨다.

제118조 ① 공무 선박 검사, 선원 배치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문이 유관 주관 부문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② 체육 운동 선박의 등기, 검사 방법은 국무원 체육 주관 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훈련, 시험 기간의 체육 운동 선박의 해상

교통안전 감독 관리는 체육 주관 부문이 담당한다.

③ 어업 선원, 어업 무선통신, 어업 항로표지의 감독관리, 어업 선박의 등기관리, 어항 수역 내의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어업 선박(외국 국적 어업 선박 포함) 사이의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는 현금 이상 인민정부 어업어정 주관 부문이 담당한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어업 선박 사이의 교통사고의 조사와 처리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④ 전관 규정을 제외하고, 어업 선박의 해상 교통 안전 관리는 해사관리기구가 담당한다. 어업 선박의 검사 및 그 감독관리는 해사관리기구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⑤ 부유식 석유저장장치 등 해상 석유, 천연가스 생산 시설의 검사는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9조 ① 해상 군사 관할 구역과 군용 선박, 해상 시설의 내부 해상 교통 안전 관리, 군용 항로표지의 설치와 관리 및 군사 목적으로 진행되는 작업 또는 수상과 수중 활동의 관리는 중앙 군사위원회가 별도로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② 해상 교통 기능 구역 또는 영해 내 특정 수역의 획정, 조정, 해상 페리선착장의 운항노선 획정, 해상 시공 작업 허가가 군용 선박의 전투장비, 훈련, 보급 등 행동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사전에 유관 군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군사 운수 임무 집행에 특수한 필요가 있으면, 유관 군사기관은 반드시 적시에 해사관리기구에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편의를 주어야 한다.

④ 해상 교통 안전 관리가 국방 교통, 군사 시설 보호에 관련 되는 경우, 유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0조 ① 외국 국적 공무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에서 항행, 정박, 작업하는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내의 외국 국적 군용 선박의 관리는 유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1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과 본법에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되, 중화인민공화국이 보류를 성명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122조 본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일**